

문서번호	어르신사회복지과-5308
결재일자	2014.11.12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
주무관	장애인복지담당	어르신사회복지담당	교육문화복지담당		
정계화	마승용	양홍석	11/12 도일환		
협 조	주무관 김태균				

##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



**교육문화복지국**  
**어르신사회복지과**



##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

장애인·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·불량시설의 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해소 대책 마련 및 지속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,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.

### I 관련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)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지침)
- '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기본계획(소방방재청, '14.8.21)

### II 시설현황 및 조사대상 시설

-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범위 :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장애인·노인복지시설  
※ '13. 8. 6.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노유자시설 신설

- 조사대상 시설 : 4개소

연번	시설유형	시설명	주소	건축년도	면적	비고
1	다중이용건축물 (의료시설)	성북장애인복지관	성북구 화랑로 130	2007년	2,460㎡	
2	다중이용건축물 (의료시설)	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	성북구 동소문로 257길 20	1997년	1,695㎡	
3	다중이용건축물 (노유자시설)	승가원	성북구 개운사길 76-1	1998년	1,409㎡	
4	다중이용건축물 (노유자시설)	정릉노인요양원	성북구 정릉로12길 19	2008년	1,051㎡	

### III 세부조사일정

-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
  - 조사기간 : 2014. 11. 13. ~ 11. 24.
  - 조사대상 : 관할지역에 소재한 특정관리대상시설
  - 조사방법 및 내용 : 각 시설담당 책임하에 실시
    - 1차 : 각 시설별로 [안전등급 평가매뉴얼]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, 소방 등 외부전문가 참여하여 불임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사 실시
    - 2차 : 구 및 분야별 전문가와 점검결과에 의거 등급 결정(A~E등급)
- 일제조사 결과조치
  -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(A~E)
    - 중점관리시설(A·B·C급) 또는 재난위험시설(D·E급)로 지정
  -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(NDMS) 조사결과 입력 및 현행화
    - 시설개요(준공년도, 구조, 면적 등), 위치도 및 사진, 장·단기 해소계획, 재난대비체계,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, 관리책임자 지정 등 입력 및 현행화 철저
  - 조사결과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반드시 소유자(관리자)에게 통보

구 분	중점관리시설	재난위험시설	비 고
정	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	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	
부	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</li> <li>·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</li> </ul>	추가

- 재난위험시설(D, E급)
  - 안전등급평가 결과 D, E급 시설
    - 공공시설 :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
    - 민간시설 :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

-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 제한·금지 등 응급조치
- 재난위험시설(D, E등급)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
- 보수·보강, 개축 등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 제출(시 도시안전과)

### III 행정사항

-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(NDMS) 입력 : '14.11.25.한
- 일제조사 결과(서식1~4번)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·단기계획 제출 : 11.27.한(구→서울시 도시안전과)
-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통보 : '14.12월중(구→시설)

- 붙 임 1.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대상 1부.
2.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분야별 체크리스트 1부.
3. 일제조사결과 보고서식(1~4번) 각 1부.
4.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명단 1부.
5. 특정관리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 1부. 끝.